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70
----------	----

제출년월일 : 2006. 11. 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안 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6. 6.29. 대통령령 제19552호)으로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여유기구(1개과·담당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 내용·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07. 6. 30.까지 한시기구인 혁신기구를 정규 직제화

2. 주요 내용

- 가.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제1항)
- 나.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첨1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2
- 라. 관련 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를 “제6조의2, 제7조”로 하고,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 ①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52호]

제2장 본청의 기구

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에 필요한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 교육청 : 2개 과·담당관
2.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및 도 교육청 : 1개 과·담당관

제7조 (실·국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외의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과·담당관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제7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부산광역시교육청		2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경기도교육청		5실·국이내	24과·담당관이내
광역시	인구 : 800만이상, 학생 : 160만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400만이상, 학생 : 80만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200만이상, 학생 : 40만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 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도	인구 : 600만이상, 학생 : 120만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300만이상, 학생 : 60만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150만이상, 학생 : 30만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 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비 고

1. 실·국 및 과·담당관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국·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
2. 학생수는 각급학교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말하고, 인구수는 주민등록표상의 1월 1일 기준 인구수를 말하며, 학생수·인구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본청 공통필수기구(제7조제2항관련)

명칭	사무분장
부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에 대한 업무보조 ○교육감이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 ○경기도의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의 분장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부교육감은 제2부교육감이 관장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도의 교육사무를 총괄한다. - 제2부교육감은 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지역에 대하여 도의 무를 총괄한다. - 도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이를 총괄하되, 제2부 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관리실(서울특별시, 경기도 교육청 제외한 시·도 교육청은 기획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행정관리·법제·의회업무등에 관한 사항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별표 3]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국장	과장·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장학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장학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제2부교육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광역시 및 도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장학관·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비고 :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과장 및 담당관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과장 또는 담당관 및 범위 안에서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본청</p> <p>제5조~제7조 (생략)</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p> <p>-----</p> <p>-----</p> <p>----- 제6조의2, 제7조 -----</p> <p>-----</p> <p>-----</p> <p>제2조~제4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본청</p> <p>제5조~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 ①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11.28.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11. 3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6.11. 3.

다. 상 정 일 자 : 제162회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 24)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이치범)

1. 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1개과·담당관의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제1항)

나.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Ⅲ. 검토의견(전문위원 : 인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6년 6월 29일 개정되어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1개 과·담당관의 여유기구를 설치하고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는, 기존의 기구에서 여유기구인 1개 과·담당관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이던 혁신기구를 정규 직제화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정원 증원이나 소요예산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